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(중단)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

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6. 23.

경기도고용노동청장



-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(중단)처분 사전통지
- 근 거 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4항, 제29조제1항제6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이○민	2001. 1. 3.	경기 수원 팔달구 화양로47번길 17-5(이하 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(중단)처분 사전통지	필수 대면 상담일에 미방문 (출석통지 2회 이상 불응 및 연락두절 등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(중단) 및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 등

4. 공고기간 : 2026. 6. 23. - 2026. 7. 6. (14일간)

5. 기타 사항은 경기도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과 권선진(Tel. 031-231-7922)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